

1. 개정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법률 제20290호, 2024. 2. 13., 공포, 2024. 7. 10. 시행)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

2. 주요내용

-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, 구성,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(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9999. 12. 31. ~ 12. 31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1조(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사항)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장애판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 <u>1. 장애 인정 · 장애 정도 사정(査定)기준과 장애 진단 방법에 관한 사항</u> <u>2. 그 밖에 장애 인정 · 장애 정도 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	<삭 제>
<u>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<u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 <u>1. 장애인에 대한 진단 · 재활 · 치료 ·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	<삭 제>

2.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	
제13조(위촉위원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3조의2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	<삭 제>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	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	
제14조(위원장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	<삭 제>
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	<삭 제>
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장으로 한다.

<삭 제>

제17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삭 제>

제18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삭 제>